



2017.04.26

(17-2280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 위원회

원문: 영어

고지

다음 고지는 10.6 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	고지 회원국: 아랍에미리트, 바레인, 쿠웨이트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예멘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 이름 (3.2 및 7.2 항):
2.	담당 기관: 에미리트표준화및계량청(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: ESMA)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와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의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 에미리트표준화및계량청(ESMA) 사서함: 216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전화: (+971) 2 403 2613 팩스: (+971) 2 671 0999 이메일: esma@esma.ae 웹사이트: http://www.esma.ae
3.	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X], 5.7.1 [] 등에 근거하여 고지:
4.	해당 제품 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세번(national tariff heading). 해당될 경우, ICS 번호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
5.	고지 문서의 제목, 페이지 수, 언어: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에 관한 GCC 기술규정 초안(35 페이지, 아랍어)
6.	내용 설명: 본 GCC 기술규정은 이 규정의 조항(2)의 정의에 따라서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에 적용한다. 이들 제품의 기본 요건은 회원국의 GCC 시장에서 용이한 거래와 사람 및 환경의 보호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출시 전에 결정해야 한다.
7.	해당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한 목적과 근거: 환경 및 소비자 보호

8.	관련문서: -
9.	채택 예정일: 해당사항 없음 시행 예정일: 관보에 공포 후 180 일
10.	의견 마감일: 고지 후 60 일
11.	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해당될 경우, 다른 기관의 주소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, 웹사이트 주소: 에미리트표준화및계량청(ESMA) UAE TBT 질의처 전화: (+971) 2 403 2657 팩스: (+971) 2 671 5999 이메일: uaetbt@esma.gov.ae 웹사이트: http://www.esma.gov.ae